

대구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6나25387 판결 [보증금 지급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구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6나25387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2009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상주시

피고, 피항소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정정전: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변론 종결 2017. 12. 22.

판결 선고 2018. 2. 2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 8. 25. 선고 2015가합200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1,207,1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에 아래 제2항과 같이 '당심이 고치는 부분'과 같이 수정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이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5, 16행의 '원고가 백필터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음-

한국하이테크가 백필터의 위치를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즉 ① 백필터의 위치를 당초 설계에서 변경한 설계도면이 준공 검사 시에 제출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② 대구고등법원 2016나25479 사건에서 제1심감정인 A의 하자감정결과(갑 제10호증)의 취지는 백필터의 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더 효율적으로 악취가 제거되므로 그 위치변경은 하자가 아니라는 것인 사실에 비추어 보면,

3. 당심이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2행 '악취 등 하자가 발생하여 이 사건 설비를 위탁운영하지 않게 되었다.'의 뒤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음-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과정에

한국하이테크가 설계도서 기타 지시서를 위배하여 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한국하이테크가 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보증사고'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제1조 제1항), 대구고등법원 2016나25479 사건에서 제1심감정인 A의 하자감정결과(갑 제10호증)의 취지는, 한국하이테크는 설계도면에 의하여 적정하게 시공하였다는 것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진성철

판사진원두

판사성기준